[제3호 서식]

**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**

사 건 호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

당사자 부 성 명

 주민등록번호 -

 모 성 명

 주민등록번호 -

협 의 내 용

**1. 친권자 및 양육자의 결정 ( □에 ✔표시를 하거나 해당 사항을 기재하십시오).**

|  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**자녀 이름** | **성별** | **생년월일(주민등록번호)** | **친권자**  | **양육자**  |
|  |  □ 남 □ 여 |  년 월 일 ( - ) |  □ 부 □ 모 □ 부모공동 |  □ 부 □ 모 □ 부모공동 |
|  |  □ 남 □ 여 |  년 월 일 ( - ) |  □ 부 □ 모 □ 부모공동 |  □ 부 □ 모 □ 부모공동 |
|  |  □ 남 □ 여 |  년 월 일 ( - ) |  □ 부 □ 모 □ 부모공동 |  □ 부 □ 모 □ 부모공동 |
|  |  □ 남 □ 여 |  년 월 일 ( - ) |  □ 부 □ 모 □ 부모공동 |  □ 부 □ 모 □ 부모공동 |

**2. 양육비용의 부담 ( □에 ✔표시를 하거나 해당 사항을 기재하십시오. )**

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
| **지급인** | □ 부 □ 모  | **지급받는 사람** | □ 부 □ 모 |
| **지급방식** |  □ 정기금  |  □ 일시금  |
| **지급액** | 이혼신고 다음날부터 자녀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미성년자 1인당 매월 금 원 (한글병기: 원) | 이혼신고 다음날부터 자녀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의 양육비에 관하여 금 원(한글병기: 원) |
| **지급일** |  매월 일 |  년 월 일 |
| **기타** |  |
| **지급받는 계좌** | ( ) 은행 예금주 : 계좌번호 : |

**3.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( □에 ✔표시를 하거나 해당 사항을 기재하십시오. )**

|  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**일 자** | **시 간** | **인도 장소** | **면접 장소** | **기타(면접교섭시 주의사항)** |
| □ 매월 째 주 요일 |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|  |  |  |
| □ 매주 요일 |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|  |  |
| □ 기타 |  |  |

 **첨 부 서 류**

1.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,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소득금액 증명원 등 소득금액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 - 부, 모별로 각 1통

2. 위 1항의 소명자료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･모 소유 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부･모 명의의 임대차계약서, 재산세 납세영수증(증명)

3.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서가 있는 경우 그 합의서 사본 1통

4.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사본 2통

**협의일자 : 년 월 일**

부 : (인/서명) 모 : (인/서명)

|  |  |
| --- | --- |
| ○ ○ 가정(지방)법원 | 판사 확인인 |
| 사건번호 |  |   |
| 확인일자 |  . . .  |

**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작성요령**

|  |
| --- |
| ※ 미성년인 자녀(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,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또는 법원이 별도로 정한 기간 내에 성년이 되는 자는 제외)가 있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할 때는 자녀의 **양육과 친권자결정**에 관한 협의서를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.※ 미성년자녀가 입양된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친권이 소멸되고 양부모가 친권자가 되므로, 친생부모는 입양된 자녀에 대하여는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서는 안 됩니다.※ 이혼의사확인신청후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가정법원에 그 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. ※ 확인기일까지 협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혼의사확인이 지연되거나 불확인 처리될 수 있고, 협의한 내용이 **자녀의 복리**에 반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할 수 있으며 보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 불확인 처리됩니다.※ 이혼신고일 다음날부터 미성년인 자녀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양육비에 관하여는 **양육비부담조서**가 작성되며, 이혼 후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른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. 그 외 협의사항은 **‘별도의 재판절차’**를 통하여 과태료, 감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고,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.  ※ 협의서 작성 전에 가정법원의 상담위원의 상담을 먼저 받아 보실 것을 권고합니다. |

**1. 친권자 및 양육자의 결정**

**친권자**는 자녀의 재산관리권, 법률행위대리권 등이 있고, **양육자**는 자녀와 공동생활을 하며 각종의 위험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. 협의이혼시 친권자 및 양육자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부 또는 모 일방, 부모 공동으로 지정할 수도 있으며, 친권자와 양육자를 분리하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(**공동친권, 공동양육의 경우는 이혼 후에도 부모 사이에 원만한 협의가 가능한 경우**에만 바람직하며, 각자의 권리･의무, 역할, 동거기간 등을 별도로 명확히 정해 두는 것이 장래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).

임신 중인 자의 특정은 자녀이름란에 ‘모가 임신 중인 자’로 기재하고 생년월일란에 ‘임신 ○개월’로 기재함으로 하고, 성별란은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.

**2. 양육비용의 부담**

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는 친권자나 양육자가 아니어도 부모로서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입니다. 양육비는 자녀의 연령, 자녀의 수,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을 협의하여야 합니다.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이혼신고 전 양육비 또는 성년이후의 교육비 등은 부모가 협의하여 “기타”란에 기재할 수 있으나, 양육비부담조서에 기재되지 않으므로, 강제집행을 위하여는 별도의 재판절차가 필요합니다.

**3.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**

｢민법｣ 제837조의2 규정에 따라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(비양육친)의 일방과 자녀는 서로를 만날 **권리**가 있고, 면접교섭은 자녀가 양쪽 부모의 사랑을 받고 올바르게 자랄 수 있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. 면접교섭 일시는 자녀의 일정을 고려하여 **정기적･규칙적**으로 정하는 것이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에 도움이 되고, 자녀의 인도장소 및 시간, 면접교섭 장소, 면접교섭시 주의사항(기타 란에 기재) 등을 자세하게 정해야 장래의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.

**4. 첨부서류**

협의서가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부, 모의 월 소득액과 재산에 관한 자료 등이 필요하므로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.

**5. 기타 유의사항**

법원은 협의서원본을 2년간 보존한 후 폐기하므로, 법원으로부터 교부받은 협의서등본을 이혼신고 전에 사본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.